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1991. 9.

金奎斗 (國際研究室 研究員)

金晟鎭 (國際研究室 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目 次

I. 序 論	3
II. 非核地帶化의 理論的 背景.....	4
1. 非核地帶化의 概念 및 原則	
가. 非核地帶化의 概念	
나. 非核地帶化의 目標	
다. 非核地帶化 創設原則	
2. 非核地帶化條約의 事例	
가. 中南美 非核地帶化條約	
나. 南太平洋 非核地帶化條約	
3. 非核地帶化의 成立條件	
III. 北韓의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	13
1. 非核地帶化 主張의 展開過程 및 內容	
2. 北韓의 意圖 分析	
가. 美國의 對韓 核雨傘 除去	
나. 北韓의 核武器開發 隱蔽 企圖	
다. 北韓의 國際的 이미지 改善	
라. 韓國의 核開發 沮止	
VI. 韓國의 對應方向	21
1. 對北韓 對應方案	
2. 韓國의 獨自의인 核政策 樹立	

빈 면

I. 序 論

최근 北韓의 核査察 수용문제와 核武器開發 可能性이 국제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 北韓으로부터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韓半島의 核問題가 남북한간의 주요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北韓은 1991년 7월 30일 外交部 聲明을 통해 한층 구체화된 韓半島 非核地帶化 提議를 한 바 있으며, 또한 1991년 10월로 예정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불가침선언과 병행하여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北韓의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案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차제에 核問題에 대한 韓國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北韓의 非核地帶化 提案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理論的 背景으로서 非核地帶化의 개념,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일반적인 비핵지대화의 成立條件을 제시하고, 둘째, 北韓의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의 전개과정 및 내용, 그리고 북한 의도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결론을 대신하여 北韓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向을 모색해 본다.

II. 非核地帶化의 理論的 背景

1. 非核地帶化의 概念 및 原則

가. 非核地帶化의 概念

非核地帶化란 “特定地域內 核武器의 排除”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역내 국가들간의 조약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핵무기의 생산 및 배치를 금지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비핵지대화의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非核地帶化 條件에는 비핵지대 참여 비핵국가에 대한 핵보유국의 핵무기의 사용이나 핵무기 사용위협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¹⁾

지역내의 核武器 擴散 危險이 비핵지대 창설논의의 動機 및 原因이므로 비핵지대화의 일차적인 목적은 지역내 핵무기 개발 및 확산방지에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핵무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확보·유지하는 것이 비핵지대화 개념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1967년에 체결된 「중남미 핵무기금지조약」을 주도했던 멕시코는 “非核地帶(Nuclear-Weapon-Free Zone)란, 첫째, 핵무기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말하며, 둘째, 지역국가의 의무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國際查

1) United Nations, *Armament and Disarmament: Commonly Used Terms and Acronyms* (New York: Department for Disarmament Affairs of United Nations, 1989), p. 34.

察 및 統制體制를 수립하는 條約이나 協定을 통해서 일단의 국가들이 자유로운 주권행사에 의해 창설한 지역”이라고 非核地帶의 概念을 정의한 바 있다.

나. 非核地帶化의 目標

이러한 非核地帶化 추진의 구체적 目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核軍備競爭 및 核武器 擴散을 방지하고 核攻擊의 목표가 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지역의 安保 및 平和增進을 꾀하는 것이다. 즉 ① 지역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 ②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 ③ 핵무기경쟁 억제에 기여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④ 核戰爭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 등이 非核地帶創設論의 중요한 요지이다. 그러나 비핵지대 창설의 제조건과 특성이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비핵지대 창설이 오히려 특정 지역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둘째, 핵에너지의 軍事的 利用을 금지하는 대신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체제 구축의 기반이 된다.

셋째, 비핵지대가 일정지역에 창설될 경우 여타 지역에도 파급효과를 갖게 되어 범세계적인 전면·완전 軍縮에의 접근 전망을 밝게 함으로써, 초강대국의 핵무기 감축노력에도 선도

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非核地帶化 創設原則

비핵지대화의 창설원칙은 비핵지대문제에 대한 연구를 촉구한 유엔총회 결의안 3261-F호(1974. 12. 9)에 입각한 1975년 8월 유엔군축위원회 특별보고서(제30차 유엔총회 결의안 3472-B호)에서 잘 제시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관련지역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核武器가 없는 지대가 되도록 보장한다.

둘째, 합의된 의무의 이행을 위한 檢證體制를 규정한다.

셋째,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역국가들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비핵지대의 경계는 국제법에 보장된 自由航行原則을 준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핵무기가 없는 지대를 보장함에 있어서 모든 당사국에 대한 핵폭발장치 개발·획득·보유 금지가 원칙이나 「核擴散防止條約」(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 : NPT) 제5조에 규정된 핵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非核地帶가 창설될 경우, 관련 비핵국과 핵보유국은 비핵지대화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의무를 가지게 된다. 앞서 언급한 유엔군축위원회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비핵국은 핵폭발장치의 개발·실험·생산, 핵무기의 획득·보유·입수, 핵무기의 설치·저장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의 운반 및 통과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核保有國의 의무는 첫째, 비핵지대내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 금지, 둘째, 해당지역에서의 핵무기 배치·설치·저장의 금지 및 기존의 핵무기와 핵시설의 즉각적인 철수, 셋째, 해당지역에 軍事基地가 있을 경우, 핵무기의 不在 保障 및 기지나 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 넷째,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생산·획득 목적의 원조제공 금지, 그리고 끝으로 인접지역에 대한 안전지대창설에 협력할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非核地帶化條約의 事例

비핵지대화 제안은 1957년 10월 제12차 유엔총회에서 제안된 「중부유럽 비핵지대창설안」(Rapacki Plan)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후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非核地帶化條約이 체결되었다. 1959년 12월에 체결된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1967년 1월의 「우주공간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 활동을 다루는 원칙에 관한 조약」(Outer Space Treaty),

1967년 2월에 체결된 「중남미 비핵지대화조약」(Latin American Nuclear Free Zone Treaty), 1971년 2월의 「해저 비핵지대화조약」(Seabed Treaty), 그리고 1985년 8월의 「남태평양 비핵지대화조약」(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중 「남극조약」과 「우주공간에 관한 조약」은 비핵지대화조약이라기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非武裝地帶化條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머지 세가지의 비핵지대화조약 가운데 「중남미 비핵지대화조약」과 「남태평양 비핵지대화조약」만이 人口居住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두가지 조약을 간략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가. 中南美 非核地帶化條約

1967년 2월 14일 멕시코 시티에서 체결된 「중남미 비핵지대화조약」은 1968년 4월 22일 발효되었으며, 중남미 지역 27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條約加盟國은 각국의 영토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의 실험·사용·제조·생산 및 획득을 금지하며, 핵무기의 인수·저장·설치·배치 및 어떠한 형태의 소유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핵무기 실험·사용·제조·생산 및 소유에 연루되거나, 이를 장려 인정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다만 핵무기의 영토 통과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조약에는 두개의 議定書가 포함되어 있다. 제1의정서(Pro-

ocol I)는 네덜란드·영국·미국 등 이 지역에 영토를 소유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해당 영토를 비핵지대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2의정서(Protocol II)는 핵무기 보유국들이 중남미 비핵화 정신을 존중하며 조약가맹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이 의정서를 통해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자국의 안보에 대한 國際的 保障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5개 핵무기보유국은 모두 이 의정서를 비준·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 비핵지대화조약」의 경우,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 가운데 반 정도만이 國際原子力機構(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와 核安全協定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조약에 대해 비핵지대 참여국간에 그리고 이들과 핵보유국간에 평화적 핵폭발·적용범위·검증방안·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안전보장 등의 문제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1990년 11월까지 자국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安全檢査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조약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²⁾ 핵무기 보유국들도 제2의정서에 서명하면서 여러가지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단지 평화시에만 이 지

2) 양국은 1990년 11월 自國 핵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수용기로 결정하였다.
David Albright, "Brazil Comes in from the Cold," *Arms Control Today*, Vol. 20, No. 10 (December 1990), p. 15.

역의 非核化가 보장될 수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의 의정서 준수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도 이 조약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南太平洋 非核地帶化條約

남태평양 지역이 域外 強國들의 핵활동(특히 프랑스의 지하 핵실험)의 場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1985년 8월 6일 체결된 「남태평양 비핵지대화조약」은 1986년 12월 11일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는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피지 등 남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약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조약가맹국들은 이 地域內外에서 핵무기의 획득·생산·보유·관리와 자국 영토내에서의 실험·배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핵물질이나 장비를 공급할 수도 없다. 한편 외국의 핵무장 함정과 항공기의 지역내 통과와 방문은 조약가맹국 각자가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남태평양 비핵지대화조약」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영국·미국 등 관련 핵보유국들은 안보상의 이유로 조약의 해당 의정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이 지역(Mururoa Atoll)에서 核實驗을 계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약으로 인하여 지역내의 모든 핵관련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

어, 핵무기 탑재 함정이 계속 남태평양을 항해하고 이 지역에 寄港하고 있다.³⁾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핵무기 관련 시설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미·중·소의 탄도미사일 실험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3. 非核地帶化의 成立條件

이상에서 고찰한 비핵지대화의 概念 및 原則과 비핵지대조약의 事例에서 보여지듯이, 비핵지대화가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條件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그 중에서 특히 기본적인 조건을 몇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핵지대화조약은 당해 지역에 핵무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특정 지역에서 비핵지대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내 모든 국가 및 관련 핵보유국이 條約에 참여해야만 한다.

셋째, 비핵지대화조약은 합의된 義務 事項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다.

넷째, 비핵지대화조약은 핵보유국으로부터 지역국가에 대

3) 다만 조약 참여국중 뉴질랜드는 國內法으로 핵무기의 소유·생산·배치·실험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領海에 핵무장 함정이나 핵추진 함정이 들어 올 수도 없고 핵무기 탑재 항공기가 領土에 착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핵무기 사용은 물론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비핵지대화조약은 핵에너지의 平和的 利用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국들의 경제·과학·기술적 발전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호혜적인 의무를 수반한다.

이상의 기본조건 이외에도 비핵지대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附隨條件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상기 조건조차도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비핵지대화 운동이 논의에 그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기존의 비핵지대화조약은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던 지역을 비핵지대로 선포했을 뿐이지 배치된 핵무기를 제거했던 것은 아니다.

비핵지대화 움직임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핵지대화 대상 지역에 利害를 가지고 있는 관련국가들의 입장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미 대륙 등 核地帶化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비핵국가간, 핵보유국간, 그리고 비핵국가와 핵보유국간의 이해가 대립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비핵지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핵지대화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핵지대화의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 동남아 일부, 남미,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에서조차 域內의 주체적인 노력의 결여, 경제발전 수준의 상이성, 核開發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이해상충 등

으로 인해 비핵지대화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北韓의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

1. 非核地帶化 主張의 展開過程 및 內容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반응은 1956년 11월 개최된 제1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소련 입장을 지지하는 反核原則을 천명함으로써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며 駐韓美軍이 戰術核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 에 근거한 것이었다. 특히 북한은 1962년 10월 쿠바사태를 계기로 소련의 핵무기가 가지는 對美 抑止力 및 소련의 북한 방어 의지에 의구심을 품고 주한미군 보유의 핵무기에 대한 자체적인 對應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76년 8월 東京에서 개최된 한국문제 긴급국제회의에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 카터 행정부의 駐韓美軍 철수계획이 발표되자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철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세계적 반핵운동과 非同盟 중심의 비핵지대화 주장에 편승하

하여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철수를 주장하는 등 한반도 핵문제를 본격적으로 국제문제화하였다.

그 후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한반도의 非核 및 平和地帶化 문제를 공식 거론하였고,⁴⁾ 1981년 3월에는 평양을 방문한 일본 사회당과 북한 노동당이 공동성명을 통해 東北亞의 평화·비핵지대화에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1986년 6월 23일에는 정무원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 및 평화지대 설치와 관련하여 북한·미국·남한 정부당국간 협상 용의를 표명하였다. 북한은 1988년 11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에서 주한 미군 보유 핵의 2단계 撤收案을 제의한 바 있고,⁵⁾ 1989년 11월에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3자회담을 제의하였다.

1990년 5월 31일에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의 「외국무력의 철수」 항목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하였으며, 구체적인 實踐方案으로 남조선 배치 핵무기의 즉각적인 철수를 위한 공동노력, 핵무기의 생산·구입·금지,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 항공기 및 함선의 「조선 경내」에로의 출입·통과금지 등을 제안하였다.⁶⁾

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조선중앙년감 198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1), pp. 66~67.

5) 「조선중앙년감 1989」, pp. 150~154.

6) 「로동신문」, 1990년 6월 2일.

또한 북한은 1991년 7월 30일자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제안」을 발표하였다.⁷⁾ 이 제안은 지난 1989년 11월 제의한 「군축 협상을 위한 3자회담」이나 1990년 5월 31일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등 과거의 제안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으나, 좀 더 구체성을 띠는 등 推進方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북한은 종래 주장해 온 핵문제에 관한 남북한과 미국 간의 3자회담 개최 요구를 철회하고, 주한미군 보유의 핵무기 철수를 前提條件에서 事後措置로 변경하는 등 일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되던 점들에 대해 다소의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推進方案에 있어서 1992년말까지 남북한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共同宣言하고, 美·中·蘇 등 주변 핵보유국이 이를 法的으로 保障하도록 하며, 아시아 비핵국가들이 이를 지지하도록 하는 등 推進節次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비핵지대화 선언의 당사자를 남북한 양측으로 한 점, 미·중·소의 국제적 보장을 명시한 점, 1992년말까지 비핵지대를 실현하고 주변국가의 보장은 1993년말까지 이룬다는 등의 時限을 명시한 점 등은 과거와 달리 보다 具體性을 띤 제안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7) 「로동신문」, 1991년 7월 30일.

2. 北韓의 意圖 分析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은 기본적으로 對南戰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한국내의 反美·反核運動을 고무시키는 등 對南 平和攻勢的 性格을 띠고 있으나, 이와 함께 미국의 對韓 核雨傘 除去, 북한의 核武器開發 隱蔽,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 및 한국의 核武器開發 沮止 등의 意圖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 美國의 對韓 核雨傘 除去

북한은 주한미군 보유의 핵무기가 남북한 대치를 심화시키고, 한반도에서의 核戰爭 危險性을 고조시키며, 이로 인해 소규모 전쟁도 世界戰爭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주한미군 및 주한미군 보유 核武器의 撤收를 국제적으로 輿論化하여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對韓 安保介入 명분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북한은 核武器의 실험·생산·저장·반입 금지, 외국군의 核基地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의 설치 금지, 그리고 외국 핵무기의 영토·영공·영해 통과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

어) 사실상 地上核은 물론 海上 및 航空機를 이용한 미국의 對韓 核雨傘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비핵지대 참여국가에 대한 核保有國의 義務에 있어, 핵보유국의 지지나 지원을 받는 국가가 비핵지대 참여국을 침공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핵국에 대해 核先制攻擊은 물론 在來武器에 의한 先制攻擊을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 가입 비핵국가에 대한 核保有國의 義務條項을 근거로 美國이 對北韓 核不使用을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방식으로 특별 선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북한이 여하한 경우에도 미국 핵무기의 공격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즉 북한의 先制軍事行動에 대해서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으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 北韓의 核武器開發 隱蔽 企圖

원자력에 대한 북한의 연구는 1959년 9월 소련과 原子力協定을 체결하고 1962년 영변에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1965년 최초로 소련이 제공한 2 MW급 研究用 原子爐를 설치하였으며⁹⁾ 이후 1986년 12월 원자력사업

8) 리문환,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은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절박한 과업,” 「근로자」, 제576호 (1990. 4), p. 93.

9) 이 원자로는 1970년 4 MW급으로 출력이 증가되었으며, 1977년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부를 정무원 산하에 발족시킴으로써 原子力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核武器開發에 대한 우려는 1980년대 초에 소련이 제공한 원자로 옆에 제2의 원자로 건설이 탐지되면서부터 제기되었다.¹⁰⁾ 특히 1985년 12월 「핵확산방지협정」 가입에 따른 의무조항인 핵시설에 대한 國際原子力機構의 査察을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개발 문제는 美·日·蘇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대상으로 대두되었다.¹¹⁾

10) 1980년에 착공하여 1987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약 30 MW급의 가스·흑연 원자로(gas-graphite reactor)로서, 연간 7kg의 플루토늄(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1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은 1984년부터 프랑스의 구형모형을 모방한 약 50~200 MW급 대형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것이 완성될 경우 핵무기를 2~5개를 만들 수 있는 약 18~5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영변에 핵연료 재처리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 미국은 1990년 1월 5일 북한과의 참사관급 접촉에서 북한측의 접촉수준 격상요구에 대해 그 前提條件으로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 테러포기, 팀스피리트 훈련에의 읍저버 참가 등을 요구한 바 있으며, 1991년 6월 10일 터트와 일러 美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조기에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완전히 이행한다면 이는 긍정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은 일·북한 수교회담과 관련하여 일본에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修交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베스메르트니흐 소련외무장관은 1991년 3월 30일 “북한의 핵사찰 수용은 북한의 당연한 의무이며, 북한이 자신들의 핵사찰 수용문제를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그나텐코 소련 대통령 대변인은 1991년 4월 15일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對北韓 핵연료 공급을 중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1년 7월 核安全協定の 표준문안에 假署名 하였으나, 북한의 핵사찰 이행여부와 핵무기개발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시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은 美·蘇·和解에 따른 「중거리 핵전력 감축협상」(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 INF) 및 「전략무기감축협상」(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 START) 타결, 소련의 비핵지대화 주장, 그리고 핵을 포함한 環境問題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세계적인 反核 霧圍氣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미국내에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국제문제화되고 있는 북한의 核開發問題를 反核·平和攻勢로 희석시킴과 동시에 核開發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北韓의 國際的 이미지 改善

북한은 세계적 反核運動에 편승한 平和攻勢를 통해 그 동안의 침략과 도발행위를 은폐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孤立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호전적이며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비핵지대화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비핵·평화운동에 참여하여 平和的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非同盟圈의 반미성향과 평화노선에 동조함으로써 非同盟圈에서의 地位向上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韓國內의 反核運動을 선동하는 동시에 북한정권의 道德的 優位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라. 韓國의 核開發 沮止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한국의 獨自的 核開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封鎖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개발에 대한 북한의 우려는 1970년 7월 미국의 駐韓美軍 撤收計劃이 표면화된 이후 표명된 한국 측의 반응에 따라 구체화되었다. 한국은 1972년 프랑스와 핵연료 재처리 기술도입문제를 교섭한 바 있으며, 朴正熙 大統領은 1975년 6월 「워싱턴 포스트」紙와의 회견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개발 가능성을 명확히 표명하였다.¹²⁾ 이후 박 대통령은 1977년 5월 核武器開發 意志를 재천명하였으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개발 노력은 1978년 9월 한국산 유도탄의 발사시험 성공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한편 북한은 1976년 6월 김일성대학에 원자력학과를 설치하

12) 박 대통령은 한국이 핵개발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은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수되면 생존을 위하여 핵무기개발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The Washington Post*, June 21, 1975.

고, 주한미군 및 주한미군 보유의 핵무기 철수와 한반도에서의 核戰爭 危險을 경고하는 등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개발 노력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카터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개발을 촉발하였다는 경험에 비추어, 부시행정부에 이르러 진행되고 있는 駐韓美軍의 段階的 撤收가 또 다시 한국의 核武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제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韓國의 對應方向

1. 對北韓 對應方案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은 순수한 평화지향적 주장이라기 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핵무기개발을 은폐함과 동시에 주한미군 및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의 철수를 겨냥한 攻勢的 性格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에 대한 對應方案은 북한 핵정책의 二重性和 비핵지대화 주장의 非現實性을 부각시키는 대응논리의 개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인 바, 이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핵정책의 이중성 또는 모순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1970년대 이후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제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지역이 비핵지대화되려면 제II장에서 제시한 바 있는 일반적인 非核地帶化의 條件부터 충족되어야 하는데, 한반도에는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對應論理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북한의 계속적인 군비증강, 북한의 핵개발 포기의지에 대한 신뢰성 결여, 한반도의 地政學的인 중요성으로 인한 주변 4강의 이해대립, 그리고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의 핵무기 사정권내에 있다는 사실 등 한반도 및 동북아의 軍事的 狀況이 한반도 비핵지대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對北韓 반박논리의 출발점으로 삼아 韓國의 對應戰略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한국이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主導하는 대응방안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충족시킨 연후에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前提條件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 開發意思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공표할 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핵확산방지조약」 서명국의 일원으로서 북한은 계속 미루어온 국제원자력기구의 核安全協定을 즉각 체결하고, 북한내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국제적인 안전검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國際法上의 義務로서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남북한의 相互不可侵條約 등을 통한 신뢰회복과 평화정착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치들이 남북한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비핵지대화에는 주변강대국인 미·일·중·소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이 「交叉承認」을 수락할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비핵지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북한간에 심각한 在來式 戰力 불균형이 존재하며 세균 및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도 여전히 한반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비핵지대화와 더불어 이러한 점들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북한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의 감축, 세균 및 화학무기의 全廢問題와도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남북한간의 軍事力 均衡維持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檢證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을 주장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본원칙 및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³⁾

여섯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및 주한미군 보유의 전술핵무기 철수는 중·소의 핵무기가 한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중·소가 동북아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의 철수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일차적으로 한반도의 관련 핵강대국인 미·소·중 등이 일련의 「保障議定書」에 동의하고, 이를 기초로 기타 핵보유국가도 이에 참여하는 多元的 保障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13) 특히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檢證方案으로는 다음 몇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① 국제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검사를 전면 수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안전협정에 서명하고 전면적인 검사를 받아들여 핵무기 개발의사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② 남북한 쌍방의 독자적인 검증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한간에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이 합의될 때, 이의 검증을 위해 설치된 기구가 한반도 비핵지대화 검증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핵무기 보유국의 義務履行에 관한 검증도 요구된다. 미·소·중·일·한국·북한이 참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연례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핵보유국의 핵무기 탑재, 또는 핵추진 함정의 영토 통과나 방문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內政의 문제이므로 비핵지대화의 規制對象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은 지난 1990년 5월 30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서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 비행기와 함선의 조선경내에로의 출입과 통과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중남미 비핵지대화조약」과 「남태평양 비핵지대화조약」에서도 영공의 통과나 방문은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실시는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2. 韓國의 獨自的인 核政策 樹立

한국은 향후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과 규제범위 및 방법, 검증방안, 平和的 核利用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비핵지대화 제안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基準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의 核問題에 대한 거론 자체를 금기시키기 보다는 獨自的인 핵정책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입각하여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一貫性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미국은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과 비핵지대화 제안을 평가하는 7개항의 기준¹⁴⁾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핵문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마찰이나 國益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회피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핵무기를 즉각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은 갖되 핵무기를 보유하지는 않는 「N-t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의 핵무기개발 필요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오류를 피하고자 하고 있다. 즉 일본은 「N-t정책」에 따라 국제적으로 평화적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核再處理技術을 포함한 핵에너지의 모든 製造工程을 국산화하였으며, 핵무기로의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핵능력은 미사일과 항공기 등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군사적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엄청난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일의 核政策은 한국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국내적으로 향후 반미운동과 세계적인 환경·평화운동 차원에서의 反核運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소련의 변화와 미·소간의 추가적인 군축 타결로

14) 미국이 제시한 비핵지대화에 대한 7개항의 評價基準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지역국가 주도의 비핵지대 창설, ② 모든 주요 이해관련국의 참여보장, ③ 검증조치의 확보, ④ 기존 국제안보질서의 유지, ⑤ 가맹국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 방지, 국제법상 보장된 자유통항권의 완전보장, ⑦ 역내 국가의 제3국에 대한 기존의 飛越權, 寄港權 부여권한 보장.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아·태 및 동북아지역 군축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과 연계되어 더욱 급속히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돕고, 북한 및 반핵·평화운동차원의 한반도 핵관련 제안, 그리고 아·태 및 동북아의 군축문제 등에 대한 장기적인 對備策으로서 독자적인 핵정책과 핵문제와 관련된 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